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251
----------	------

2020년 2월 25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2월 3일, 김희걸 의원(찬성자 10명)
- 나. 회부일자 : 2020년 2월 4일
- 다. 상정일자 :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0년 2월 2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희걸 의원)

가. 제안이유

- 「하천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 적용 규정을 정비함
(안 제5조제2항)
 - 연 6퍼센트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자

- 점용료등의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및 독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8조)
 - 「국세징수법」 제21조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제32조를 따름
- 징수교부금을 정비함(안 제13조)
 - 변상금 : 100분의 40 → 100분의 50
- 「하천법 시행령」 별표 3의 개정에 따라 하천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함(안 별표1)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부처 등 변경사항 반영함
(안 제12조 및 별표1, 비고2)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조례안은 「국유재산법」, 「하천법」, 「정부조직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별 의견

가. 점용료등¹⁾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 조정(안 제5조제2항)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안 제5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

- 안 제5조제2항은 동 조례 제5조제1항²⁾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할 경우 연 6%의 이자를 책정하던 것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³⁾(이하 "고시이

1) 점용료등이란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말함.

2) 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하천관리청은 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점용료등을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이는 점용료등의 분할납부와 관련된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이 2016.6.28.일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개정(대통령령 제2782호)됨에 기인한 것이며, 이 경우 이자율은 2020년 1월 기준으로 약 1.52% 수준으로 종전 이자율인 6%보다 크게 낮아 점용자의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서울시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실을 간과하여 지난 4년간 본 조례를 상위법과 다르게 운용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과오납된 점용료등은 현재까지 총 27건(1,324천원)으로 파악됨.

[표 2] 2016~2019년 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실적

(단위 : 천원)

분할납부건 수	총납부액	원금	이자	초과납부건 수	초과납부금액	비고
75	556,538	550,980	5,558	27	1,324	

*초과납부건에 대한 적정이자는 2%로 일괄 적용함

- 따라서, 과오납된 점용료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납부자에게 정산 반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나. 징수교부금 비율 조정(안 제13조)

3)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5호)

- 제1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제51조의2,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고시이자율)"은 분기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③ ~ ④ 생략

- 안 제13조는 구청장이 변상금을 징수하여 서울시에 납부할 경우 그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표 3] 개정안 조문대비표(안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징수교부금)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이 점 용료등을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할 때에는 그 납입금액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한다. 1. (생략) 2. 변상금의 경우 <u>100분의 40</u>	제13조(징수교부금) ----- ----- ----- ----- 1. (현행과 같음) 2. ----- <u>100분의 50</u>

-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16.7.12.일 개정 (대통령령 제27328호)됨에 따른 것으로, 이 역시 상응하는 조례개정 시기가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음.
- 이처럼 조례 개정을 간과한 것은 교부금을 받는 자치구나 교부금을 주어야 하는 서울시 모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법에 근거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위상을 감안할 때, 상위 법령 개정과 집행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할 것임.
- 참고로, 조례 개정으로 변상금 교부율이 10%포인트 상향될 경우 연간 교부액이 '19년 기준 약 1,9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경미할 것으로 판단됨.

[표 4] 2016~2020년 자치구 징수교부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1,340,000	1,340,000	1,100,000	1,100,000
집행액 (집행률)	1,199,789 (89.5%)	995,786 (74.3%)	951,485 (86.5%)	-
잔액	140,211	1,789,475	148,515	-

* 점용료 징수교부금 및 변상금 징수교부금

다. 점용료등의 소액불징수 금액 조정(안 별표1)

- 안 별표1의 비고1은 당초 점용료등의 산정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않았던 것을 「하천법 시행령」 별표3이 개정(대통령령 제29515호, 2019.2.8.)됨에 따라 미부과 금액이 5천원으로 상향된 것을 반영하려는 것임.

[표 5] 개정안 조문대비표(안 별표1)

현행		개정안	
[별표1] <u>점용료 등</u> 산정기준(제2조관련)		[별표1] <u>점용료등</u> 산정기준(제2조 관련)	
구분	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
1.~9.	(생략)	1.~9.	(현행과 같음)
10.하천수 사용료	가.~나. (생략) 다.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 발전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u>국토교통부장관</u> 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라. (생략)	10.하천수 사용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_____ _____ _____ _____ <u>환경부장관</u> 라. (현행과 같음)
1. 1건의 <u>점용료 등이 2천원</u>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1건의 <u>점용료등이 5천원</u> _____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u>국토해양부장관</u> 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 _____ _____ <u>국토교통부장관</u>	

현 행	개 정 안
<p>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p> <p>3.~7. (생략)</p>	<p>-----</p> <p>3.~7. (현행과 같음)</p>

- 이 경우도 서울시가 상위법 개정 사실을 간과하여 지금까지 총 8건 (31,820원)의 과오납이 발생한바 점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과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라. 용어 등 정비(안 제8조, 안 제10조 제목, 안 제10조제3항, 안 제12조, 안 별표1)

- 먼저, 안 제8조는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해 「국세징수법」 제21조를 따르던 것을 「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32조4)를 따르

- 4) 「지방세징수법」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31조(증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은 제30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 제32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2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 맺음말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나,
- 조례 개정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점용료등의 과오납 발생 등 이해당사자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을 초래하였는바, 조속한 시정과 재발방지가 요구된다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1
----------	------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3일

발 의 자 : 김희결 의원(1명)

찬 성 자 : 최웅식, 홍성룡, 전석기, 정진술,
문장길, 김평남, 이영실, 김화숙,
이병도, 박순규 의원(10명)

1. 제안이유

「하천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 적용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제2항)

○ 연 6퍼센트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자

나. 점용료등의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및 독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8조)

○ 「국세징수법」 제21조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제32조를 따름

다. 징수교부금을 정비함(안 제13조)

○ 변상금 : 100분의 40 → 100분의 50

라. 「하천법 시행령」 별표 3의 개정에 따라 하천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2천

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함(안 별표1)

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부처 등 변경사항 반영함(안 제12조 및 별표1, 비교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천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정부조직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를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로 한다.

제8조 중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부터 제32조”로 한다.

제10조 조문의 제목을 “점용료등의 반환”으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점용료 등”을 “점용료등”으로 하고, 표 구분란 중 10.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란의 다.의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비고 중 1.의 “점용료 등”을 “점용료등”으로, “2천원”을 “5천원”으로 하고, 2.의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u>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u>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조(가산금 및 독촉) 관리청은 점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따른다.</p> <p>제10조(점용료등의 반환 및 소액불징수)</p> <p>①~② (생략)</p> <p>③ 제3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산정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 ----- -----.</p> <p>제8조(가산금 및 독촉) ----- ----- -----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부터 제32조를 따른다.</p> <p>제10조(점용료등의 반환)</p> <p>①~② (현행과 같음)</p> <p>< 삭제 ></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과태료) ① 지방하천 및 영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그 권리권한을 위임받은 국가하천에 관한 과태료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p> <p>② (생략)</p> <p>제13조(징수교부금) 서울특별시는 구청장이 점용료등을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할 때에는 그 납입금액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한다.</p> <p>1. (생략)</p> <p>2. 변상금의 경우 <u>100분의 40</u></p> <p>[별표1] 점용료 등 산정기준(제2조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산 정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9.</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하천수 사용료</td> <td>가.~나. (생략) 다.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 발전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u>국토교통부장관</u>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라. (생략)</td> </tr> </tbody> </table> <p>1. 1건의 <u>점용료</u> 등이 <u>2천원</u>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p>	구 분	산 정 기 준	1.~9.	(생략)	10.하천수 사용료	가.~나. (생략) 다.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 발전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u>국토교통부장관</u> 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라. (생략)	<p>제12조(과태료) ① ----- -----<u>국토교통부장관</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징수교부금)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100분의 50</u></p> <p>[별표1] 점용료등 산정기준(제2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산 정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9.</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하천수 사용료</td> <td>가.~나. (현행과 같음) 다.----- ----- -----<u>환경부장관</u> ----- -----</td> </tr> </tbody> </table> <p>1. 1건의 <u>점용료</u>등이 <u>5천원</u> ----- -----.</p>	구 분	산 정 기 준	1.~9.	(현행과 같음)	10.하천수 사용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u>환경부장관</u> ----- -----
구 분	산 정 기 준												
1.~9.	(생략)												
10.하천수 사용료	가.~나. (생략) 다.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 발전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u>국토교통부장관</u> 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라. (생략)												
구 분	산 정 기 준												
1.~9.	(현행과 같음)												
10.하천수 사용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u>환경부장관</u> ----- -----												

현 행	개 정 안
<p>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u>국토해양부장관</u>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 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 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p>	<p>2. ----- ----- <u>국토교통부장관</u>----- ----- ----- ----- ----- ----- ----- ----- ----- ----- -----.</p>
<p>3.~7. (생략)</p>	<p>3.~7.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제2항, 제8조(가산금 및 독촉), 제13조(징수교부금), 제10조(점용료등의 반환) 및 [별표1]을 개정함에 따라, 서울시 세외수입 감소로 비용 발생
 - 다만, 제5조 분할납부 이자율의 경우, 이미 개정안대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적용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음
 - * '19년 기준 분할납부를 시행한 자치구는 12개로 노원구를 제외한 11개 자치구는 이미 개정안대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적용중이며, 노원구는 분할납부 이자수입분이 25,800원에 불과한바,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한편 제8조 증가산금의 경우, 체납 국세의 12/1,000에서 체납 지방세의 75/10,000으로 변경됨으로써 세외수입이 감소될 수 있겠으나 적용 금액이 100만원 미만에서 30만원으로 변경되어 감소분이 상쇄될 수 있고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불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 나. 추계결과 ≙ 93,355천원
 - 총 비용 : 93,355천원(연평균 18,667천원)

(단위: 천원)

연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계
구분	교부금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 (안 제13조)	△18,650	△18,650	△18,650	△18,650	△18,650	△93,250
	소액불징수 금액 변경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 (별표1)	△17	△17	△17	△17	△17	△85
	소계(a)	△18,667	△18,667	△18,667	△18,667	△18,667	△93,335
세출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b-a)		18,667	18,667	18,667	18,667	18,667	93,335

* 물가상승률 미반영, 천 원 미만 반올림

○ 전제

- 교부금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액은 ‘19년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교부 내역을 적용하고 현황의 증감은 없는 것으로 가정
- 소액불징수 금액 변경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액은 최근 5년간(‘15년~ ‘19년) 5천 원 미만 하천점용료등 평균 부과액을 적용하고 현황의 증감은 없는 것으로 가정

다. 세부추계내역

○ 교부금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액 ≍ 93,250천원

= 연간 교부금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액(18,649,902원) × 5년

▶ 연간 교부금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액 ≍ 18,649,902원

= {(하천변상금-5천원 미만 변상금) × 개정후 자치구 교부율} - (하천변상금 × 개정전 자치구 교부율)

= {(186,658,120원 - 31,820원) × 50%} - (186,658,120원 × 40%)

* 제13조(징수교부금) 중 변상금을 40/100에서 50/100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변상금 10%의 서울시 세외수입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19년, 5천원 미만 하천점용료등 부과액 31,820원 적용

○ 소액불징수 금액 변경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액 ≍ 85천원

= 연간 소액불징수 금액 변경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액(16,634원) × 5년

- ▶ 연간 소액불징수 금액 변경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액 ≙ 16,634원
- = 최근 5년간(' 15년~19년) 5천원 미만 하천점용료등 평균 부과액×(1-자치구 교부율)
- = 33,268원×50%
- * 제10조 및 [별표1]의 소액불징수 금액을 2천원 미만에서 5천원 미만으로 조정함에 따라, 2천원 이상 5천원 미만의 점용료등을 징수하지 않아 세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 최근 5년간(' 15년~19년) 5천원 미만 하천점용료등 평균 부과액 33,268원 적용 (출처: '19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 석 관	이수아
	☎ 02-2180-7944
	e-mail : sua8873@seoul.go.kr